

충남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연구

한 석 호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초빙책임연구원
ajhan@cni.re.kr

이 연구는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충청남도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체계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함에 목적이 있음

CONTENTS

1. 연구목적 및 방법
2. 무장애 관광이란?
3. 국내·외 무장애 관광 정책 사례 검토
4. 충남 무장애 관광 실태 분석
5. 충남 무장애 관광 정책목표 및 방향
6. 충남 무장애 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 제언

요약

- 이 연구에서는 충남도의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등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는 무장애 관광의 효과적인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정책 방향을 제공하고자 함
- 무장애 관광의 개념, 국내·외 무장애 관광 정책 사례 검토, 충남도 무장애 관광 실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충남 무장애 관광 정책의 목표 및 방향을 제안함
- 충남도는 ‘모두에게 열린 행복한 충남관광’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소외되지 않고 다 함께 관광 활동을 누릴 수 있는 ‘여행이 일상이 되는 유니버설 관광 선도지역’으로의 정책목표를 설정해야 함
- 이를 위해 수혜대상별 맞춤형 정책 과제 제시, 수요시장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정책 추진, 관광산업 진흥 및 충남관광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둔 정책 방향을 도출함
- 또한, 무장애 관광 지원 관련 법·제도적 기반 확립, 무장애 관광 기본계획 수립, 성공사례 육성을 통한 정책 확산 유도 등의 주요 정책 제언을 제시함

01

연구목적 및 방법

1. 연구 배경 및 연구목적

- 관광취약계층을 포용하는 무장애 관광 활성화는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정책 의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가 및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과제로 인식됨
- 우리나라 총인구의 약 30%가 무장애 관광시장의 잠재적 대상이나 여전히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의 여행 향유권은 제한적이며, 따라서 관광 장벽 제거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됨
- 충청남도는 2020년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무장애 관광 정책 수립 및 지원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실질적인 정책 계획 및 전략 실행은 미흡한 실정임
 - 제7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 무장애 관광 관련 전략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종합적, 체계적 계획구상이 아닌 제한적 수준의 사업 내용만을 포함
- 이에 이 연구는 향후 충청남도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체계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함에 목적이 있음
 - 국내 및 해외 무장애 관광 정책 사례를 조사하여 충남도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도출
 - 충남도 무장애 관광 관련 수요, 공급 실태를 진단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목표 및 과제 도출

2. 연구범위와 방법

-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로 설정함
- 시간적 범위는 2023년을 기준으로 하되, 통계자료는 구득 가능한 최신자료를 활용함
- 내용적 범위는 아래와 같음
 - 무장애 관광의 개념 및 정의
 - 국내·외 무장애 관광 정책 사례 검토
 - 충남 무장애 관광 실태 분석
 - 충남 무장애 관광 정책목표 및 방향
 - 충남 무장애 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 제언

02

무장애 관광이란?

1. 무장애 관광의 개념과 필요성

1) 무장애 관광의 개념

- 무장애 관광은 ‘관광의 물리적, 사회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관광 활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가능한 관광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됨(문화체육관광부, 2019)
- 국가별 맥락에 따라 접근가능한 관광(accessible tourism for all), 배리어프리 관광(barrier free tourism), 유니버설 관광(universal tourism) 등으로 달리 사용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모두를 위한 관광(tourism for all)을 수렴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음

[표 1] 무장애 관광 및 유사 개념

구분	개념
무장애 관광	- 관광의 물리적, 사회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관광 활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가능한 관광환경과 서비스를 제공
접근가능한 관광	-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가능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행위와 과정
배리어프리(무장애) 관광	- 장애인, 비장애인의 구별 없이 관광을 즐기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물리적 제약 없이 관광할 수 있는 것
유니버설 관광	- 접근가능한 관광(universal tourism for all)과 유사한 개념으로 관광환경 조성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모두가 사용가능한 환경으로 확대

출처: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계획 수립 연구; 이세운·곽연경(2020). 무장애관광자원의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도 거문오름을 사례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30(1). 129-145.

2) 무장애 관광의 필요성

- 관광 활동은 문화향유권¹⁾의 일환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며, 신체적 장애나 노화로 인해 관광시설 및 자원으로의 물리적 접근이나 관광 정보 획득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됨
- 따라서 관광시설 및 자원,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책임 있고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의 핵심 부분이자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 할 수 있음
 - 세계관광기구(UNWTO)는 2013년 총회에서 ‘모두를 위한 접근 가능한 관광(Accessible Tourism for All)’ 실천을 각국에 권고하였으며, 2021년 ISO 21902를 통해 주요 요구 사항을 설정하고 지침을 제공
 - 국내에서도 2007년부터 Barrier Free(BF)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중심이 되어 ‘열린 관광지²⁾’ 공모와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관광향유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지만 아직 무장애 관광에 대한 인식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
- 무장애 관광의 주요 대상인 관광 약자는 전 세계 인구의 약 16%³⁾,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2025년 이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장애뿐만 아니라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무장애 관광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⁴⁾
 -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5년간 관광 약자는 121만 명(약 2.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특히 급격한 고령화로 고령자 인구가 180만 명(5.18%) 정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 등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 정책 및 관광환경 조성은 보편적 접근 차원에서 관광향유권 보장과 지속 가능한 관광의 질적 성장 및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필수 과제임

1) 문화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2) 2015년 6개소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누적 132개소를 선정 및 조성함.
3) UNWTO 홈페이지. (<https://www.unwto.org/accessibility>)
4)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https://access.visitkorea.or.kr/main/intro03.do>)

2. 무장애 관광의 정책 대상

- 「관광진흥법」에는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는 관광복지 대상을 ‘관광취약 계층’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들의 범위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관광취약계층의 범위)에 따라 아래 [표 2]와 같이 제시함
 -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취약계층을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및 기타 경제적·사회적 제약으로 관광 활동 지원이 필요한 사람 등으로 규정

[표 2] 관광취약계층의 범위

범위	비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란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622&lsiSeq=248919#0000>)

- 이와 함께 관광 활동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 부문에 대해서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약칭: 교통약자법)에서 ‘교통약자’로 명시하며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음
 -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 문화체육관광부(2019)는 이상을 종합하여 무장애 관광의 정책 대상 범위를 설정하고 있으며, 직접적 정책 수혜대상과 간접적 수혜대상으로 구분하여 이에 맞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자 함
 - 직접적 정책 수혜대상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을 포함함
 - 간접적 정책 수혜대상은 일시적 이동 불편인, 어린이 동반 가족, 비장애인, 외국인 등을 포함
 - ‘장애인 관광 → 무장애 관광 → 모두를 위한 관광’의 방향으로 정책 범위 확대

03

국내·외 무장애 관광 정책 사례 검토

1. 국내 사례

1) 문화체육관광부

① 열린관광 환경 조성

- 열린관광 환경 조성사업은 관광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 조성 및 무장애 관광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함

[표 3] 열린관광 환경 조성

구분	주요 내용
사업 목적	- 전 국민의 균등한 관광활동 여건 조성으로 관광향유권을 보장하고, 고령사회 대비 관광환경의 개선으로 미래 관광산업의 수요 변화에 대처
추진 기간	- 2015년~계속
주요 사업 내용	- 열린 관광지 조성 - 취약계층 관광정보 제공 - 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 및 홍보
수혜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관광취약계층 - 보조사업자: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근거법령	- 「관광기본법」 제13조(국민관광의 발전) -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제76조(재정지원)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 「한국관광공사법」 제14조(보조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2023년까지 열린관광지 누적 132개소를 선정 및 조성하였으며, 개소당 국비 2.5억원을 지원함(개소당 2.5억원(100%) 이상 지방비 매칭 필수)

[표 4]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국비	자본보조	① 시설 개선 : 주차장, 체험시설, 편의시설, 화장실, 수유실, 축지도, 안내표지판 등 필수 편의시설을 지체, 시각, 청각 장애인 및 고령자, 영유아,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
지방비	자본	② 동선 개선 : 관광지점 내 시설 간 안전보행로 설치, 이동동선 상의 단차제거, 경사로 설치, 접지블록, 손잡이, 비상등 등 설치 ③ 체험콘텐츠 발굴 :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에게 특화된 상설 프로그램 개발(1회성 행사 불가)
	경상	④ 정보 제공 : 열린관광지 안내도 및 점자안내서 시안 제작(관광공사 예산)·인쇄(지자체 예산), 무장애 관광정보 수집 및 제공(지자체 예산), 누리집·앱 접근성 개선(지자체 예산) 등 ※ 열린관광 안내도 및 점자안내서, 무장애 관광정보 수집 및 제공
기타예산		⑤ 종사자 교육 : 열린 관광지 종사자, 지자체 관광 공무원 및 관광지 종사원, 문화관광해설사 대상으로 열린관광 교육 필수 참여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②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전용카드를 지급함
- 2014년에 기존 여행바우처 사업과 통합되었으며, 2018년부터 국정과제 주요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점진적으로 예산 및 지원 금액을 확대하고 있음

[표 5]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구분	주요 내용
사업 목적	-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지원으로 경제적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및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
주요 사업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177만명에게 문화누리카드 1인당 10만원 발급
수혜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운영체로 지정된 광역지자체 별 17개 지역주관체(각 시도별 광역문화재단)가 제공 - 지원조건: 지방재원 보조매칭 / 문화예술진흥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관리 규정 준수
근거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관리 지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 보건복지부

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 인증제도

○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는 인증하는 제도임

- '21년부터 건축물, 일반 민간시설, 공원 등의 BF 인증 의무화를 추진

[표 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구분	주요 내용
사업 목적	-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
인증 대상	- 개별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 지역: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인증신청자	- 개별시설: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의 시공자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 -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
인증 종류 및 신청 시기	- 예비인증: 개별시설 도는 지역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본인증 신청 전 - 본인증 ①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여객시설 및 도로: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②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지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및 「항공법」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그밖에 법령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은 이후 ③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사 등의 완료 후
근거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공동부령]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인증등급	- 최우수 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90 이상 - 우수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80 이상 90 미만 - 일반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70 이상 80 미만
인증 유효기간	- 본인증: 10년 - 예비인증: 본인증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나 개별시설 및 지역 조성 등이 완료·허가된 후 1년 이내에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됨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https://www.koddi.or.kr/bf/info/bf.do>)

②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 관광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활동 제약 및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노인을 위한 특화된 전문 돌봄여행 서비스를 제공함
- 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신체활동이 가능한 장애 등록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 및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함(단, 여행자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지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역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 사업 기획 및 집행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전자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

[표 기]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사업

구분	주요 내용
사업 목적	-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활동 제약 및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노인을 위한 특화된 전문 돌봄여행 서비스 제공
주요 사업 내용	- 장애·노인질환 등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구성하고 관광 일정에 치료 레크리에이션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제공 -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전문인력이 동반하는 여행서비스 제공 - 이용자 욕구 해소 및 가족관계 개선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기본 서비스	① 전문 돌봄인력이 동반하는 1박2일 국내여행 프로그램 - 이용자별 맞춤 프로그램(고령/지체/시각/청각 등 장애유형별) - 전문 차량 및 전문 도우미 및 간호(조무사) 등 전문인력 확보 운영 - 이용자를 위한 이동 보조구, 담요, 마스크, 손난로 등 구매 지급 ※ 서비스 제공 기준 ▪ 이용자중 1등급은 1년간 총 사업량의 5% 이상, 2등급은 1년간 총 사업량의 25%이상으로 필히 구성 ▪ 숙박시설은 특급 리조트 5인(이하) 1실 기준 ▪ 차량은 이용자의 승하차 편의를 위한 저상기능을 포함한 45인승 차량 ② 특화서비스 제공 - 통합프로그램 : 이용자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댄스, 타악 퍼포먼스, 미술, 노래, 연주 등 - 건강관리 서비스 : 혈압 및 혈당 관리 등 건강 체크, 방한용품 제공 등 - 안심전화 서비스 : 화상 기능이 있는 휴대폰 운영, 보호자와 안심통화 등
부가 서비스 (대체 서비스)	- 당일 또는 2박3일 돌봄여행 서비스 : 1박2일이 아닌 당일/2박3일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실시 가능
서비스 횟수	- 연 1회(당일, 1박2일, 2박3일)

출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rssi/view2.do?p_sn=8)

3) 국토교통부

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에 의해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제4차(2022~2026) 계획에서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4개 추진전략, 9개 정책 과제, 26개 세부과제를 제시함

[표 8]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기본방향

구분	주요 내용
비전	-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목표	- 교통행정기관, 교통사업자 간 연계 강화 - 선진국 수준의 교통복지문화 정착
추진전략 및 정책 과제	①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확대 - 노선버스의 저상버스 등 도입 확대 -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확충 및 운영 효율성 강화 ② 물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 여객시설 접근성 및 교통수단 간 연계성 강화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편의서비스 제공 ③ 시스템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 교통행정기관의 역할 및 책임 강화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정비 ④ 심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강화 - 포용적 교통복지문화 조성

출처: 국토교통부(2022).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조성-

4) 기타 광역시도 정책 동향

- 서울시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계획’에 따른 ‘다누림 관광도시 서울’ 사업을 통해 물리적 환경개선, 관광 정보·콘텐츠 제공,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의 사업을 추진함
- 경기도는 ‘문턱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관광환경 개선, 문턱 없는 관광콘텐츠 구축, 정보접근체계 구축, 관광 서비스 및 인식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함
- 강원도는 ‘모두에게 평등한 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주요 사업을 추진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17년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계획’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함

-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무장애 관광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제주도가 2013년으로 가장 먼저 공포함
- 대부분 각 광역자치단체의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 경기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충청남도는 구체적인 정책 대상의 언급 없이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이란 법규명을 사용
 - 대전광역시는 ‘관광취약계층’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등도 사용하였으나 일부개정을 통해 현재는 명칭 변경

[표 9] 전국 광역자치단체 무장애 관광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지자체	자치법규명	공포일자 (제정 전부/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23. 06. 09.(일)
경기도	-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2019. 07. 01.(일)
경상남도	- 경상남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19. 03. 28.(제)
경상북도	- 경상북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07. 13.(전)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2019. 10. 15.(전)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2020. 07. 10.(제)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조례	2021. 10. 01.(전)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2021. 05. 26.(일)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2023. 05. 22.(일)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2023. 03. 06.(일)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20. 09. 24.(제)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21. 12. 30.(일)
전라남도	- 전라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2023. 07. 03.(일)
전라북도	- 전라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20. 09. 29.(일)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시행규칙	2022. 12. 30.(일) 2013. 10. 30.(제)
충청남도	-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2022. 12. 30.(일)
충청북도	- 충청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20. 07. 10.(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검색일: 2023.07.17.)

2. 국외 사례

1) 프랑스⁵⁾

① 관광법전 내 관광접근권의 보장

- 관광은 프랑스의 고용과 경제발전에 중요한 산업으로 역할하고 있으며, 따라서 관광에 대한 법적 관심도 높은 편임
- 프랑스의 관광에 관한 입법은 20세기 초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발전을 거듭하여 2006년 ‘관광법전(code du tourisme)’을 완성하고 관광접근권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함
 - 관광법전 제4편제1목 ‘휴가 접근(accès aux vacances)’ 아래 제1장(제L.411-1조 내지 제L.411-21조)에서 ‘체크바캉스(chèque-vacances)⁶⁾’에 관한 규정 포함
 - 동법 제2장에 ‘사회적 관광에 참가하는 기관과 자연인에 대한 인증(agrément d’organismes ou de personnes physiques concourant au tourisme social)’에 관한 규정 설치
 - 제L.412-2조는 장애인의 휴가 프로그램과 관련된 인증제도인 ‘조직화된 적합한 휴가(vacances adaptées organisées)⁷⁾’ 인증에 관한 규정 마련
 - 인증제도는 단체 휴가 프로그램을 선택한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관광과 관련된 안내와 동행과 관련된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인증을 취득한 자만이 관련 프로그램의 조직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강제(행정법상 허가에 해당)
 - 조직화된 적합한 휴가 인증 없이 장애인 휴가 프로그램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3,750유로(약, 535만 원)의 벌금형 예정

5) 김명아·전주열·장원규(2019).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의 내용 발췌.

6) 체크바캉스는 근로자가 자신이 속한 회사와 동일한 금액을 부담하여 국가체크바캉스청(Agence nationale pour les Chèques-Vacances: ANCV)이 발행하는 관광 관련 상품권(체크바캉스)를 구매할 수 있고, 이를 대중교통, 숙박, 음식점, 관광지 등 휴가 경비로 지불할 수 있는 제도임. 국가체크바캉스청은 체크바캉스를 통하여 발생하는 수수료 등의 수익으로 저소득층과 같은 관광취약계층의 휴가를 지원함.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모델로 한국형 체크바캉스인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2018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음.

7) 조직화된 적합한 휴가란 ‘프랑스나 외국에서 5일 이상의 기간으로 ‘사회활동 및 가족법전’ 제L.11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여 숙박의 제공을 포함한 휴가 활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조직하거나 운영하려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은 조직화된 적합한 휴가 인증을 받아야 함.

② 열린 관광지 라벨 제도

- 프랑스에서는 2013년부터 장애를 지닌 사람이 불편함 없이 관광할 수 있는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열린 관광지(destination pour tous: DPT)’ 라벨 정책을 추진함
 - 2001년 시작된 ‘관광과 장애(tourisme et handicap)’라벨 제도가 시초지만, 해당 제도가 관광지 자체의 접근성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후 종합적인 접근성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열린 관광지 라벨 제도로 대체



[그림 1] 관광과 장애 라벨



[그림 2] 열린 관광지 라벨

- 열린 관광지 라벨 제도는 사회통합국(보건복지부), 경제·재정부(기획재정부), 기업·공정거래·소비자·노동·고용지방청(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공동 주무기관)이 공동의장으로 참여함
 - 지방 관련 단체, 경제 단체, 장애인 대표자,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 구성원이 참여하며, 이들을 총 네 집단으로 나누고 의결권 및 발언권 제공
- 열린 관광지 심사는 장애를 지닌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가정이 어려움 없이 여행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행해지며, 청각, 정신, 이동, 시각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이 중 두 가지 이상의 장애에 대해 여행의 어려움이 없을 경우 라벨이 부여됨
 - 관광시설 접근성, 일상생활 시설(상권, 의료서비스 등) 이용 가능성, 교통 및 이동 수단 접근성, 비용적 접근성 등의 영역 포함
- 라벨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 12개월 전 종합평가서를 제출해야 함

2) 일본

① 일본의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정책

- 일본의 배리어프리 관련 정책은 1960년대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기점으로 시작되었으며,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거치며 도시 정책의 기본으로 자리 잡음
- 또한, 급속한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1980년대 후반부터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인프라(마을 만들기, 건축, 교통 등) 조성 및 소프트웨어(사회 지원, 고용 등) 등 다양한 분야의 의제가 논의되기 시작함
 - 건축 분야에서는 1994년 「하트빌딩법」이 제정되었으며, 2000년에는 「교통배리어프리법」이, 이후 2006년 두 법이 통합된 「배리어프리법」⁸⁾이 제정
 - 이후, 지역 간 배리어프리화의 편차 및 기본 구상 책정률의 저조함 등을 개선하고자 2017년 ‘2020 유니버설 디자인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배리어프리법」 개정

1. 국가가 정하는 기본 방침

- 이동 등 원활화에 관한 의의 및 목표 ■ 국민의 이해 증진 및 협력 확보에 관한 사항
- 기본 구상의 지침 ■ 시설 관리자가 취해야 할 조치 ■ 이동 원활화 촉진 방침(마스터플랜의 지침)
-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기타 이동 원활화에 관한 사항

2. 국가, 지방 공공단체, 시설 설치 관리자, 국민의 책무

3. 공공교통시설 및 건축물의 배리어프리화 추진

- 물리적 이동 원활화 기준 적합은 신속은 의무, 기존 시설은 노력 의무
- 신축 기준 시설 관계없이 기본 방침에서 정비 목표를 설정하고 정비 추진
- 각 시설 관리자에 대한 정보 제공, 노약자를 위한 우선석(優先席) 장애인 주차 시설의 적정 이용을 추진하기 위한 광고 홍보 활동의 노력 의무
- 공공교통사업자에 대해 이하의 사항을 의무 또는 노력 의무화
 여행자 시설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기준 준수(신설 시설은 의무, 기존 시설은 노력 의무)
 다른 대중교통사업자 등으로부터의 혐의에 대한 수락 의무
 여객 지원,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 노력 의무
 하드웨어적·소프트웨어적 대응에 대한 현황 제공 및 공표 의무(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교통사업자 등)

4. 지역을 중심으로 일체적 배리어프리화 추진

- 지자체가 작성하는 마스터플랜이나 기본 구상을 토대로 지역에서 중점적이고 일체적인 배리어프리화를 추진
- 기본 구상에는 하드웨어 정비에 관한 각 특정 사업 및 '마음의 배리어프리'에 관한 교육 개발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관계자에 의한 사업 실시를 촉진(마스터플랜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불필요)
- 정기적인 평가 재검토 노력 의무

5. 당사자에 의한 평가

- 고령자·장애인 등 당사자로 구성된 평가 회의를 마련하고, 이동 원활화에 관한 현황 파악 평가(이동 원활화 평가 회의)

国土交通省. (2021). *バリアフリー法概要.*; 전성민(2022). 일본의 배리어프리 관련 도시 정책의 동향 및 시사점: 건축·도시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리뷰 가을 22호. p. 54.

[그림 3] 일본 「배리어프리법」의 개요

- 일본은 2025년까지 배리어프리 정비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2기 목표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택시 차량을 전국 기준 25% 이상 도입하는 등의 일상생활 권역 정비에 초점을 두고 있음

8) 「고령자·장애인 등의 이동 원활화와 촉진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서 기존 「배리어프리법」과 차이를 두기 위해 「배리어프리 신법」으로 불림.

② 유니버설 투어리즘(Universal Tourism: UT) 정책

- 배리어프리 정책과 연동하여 2005년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 대강」 이 책 정되었으며, 이때 관광 영역에서의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이 강구됨
 - 정책 대강에는 장애인, 고령자 이외에 외국인 여행자를 정책 대상으로 포함하여 관광시설,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에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배리어프리화 촉진 제안
 - 유니버설 디자인 거리 만들기(교통 BF화, 관광지 BF 정보제공 등), 마음의 배리어프리(서비스 대응 향상, 지역 대처 등) 등
- 이후 ‘유니버설 디자인의 기본방향에 근거한 관광촉진사업 검토위원회 (2006)’, ‘유니버설 디자인 사고에 기반한 관광촉진사업 검토위원회 (2008)’ 등을 설치하고 관련 조사, 사업, 지원, 검토회 등을 진행함

[표 10] 일본의 유니버설 투어리즘(UT) 정책 추진 동향

연도	정책 동향
2005	- 국토교통성,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대강」 책정
2006	- 「유니버설 디자인의 기본방향에 근거한 관광촉진사업 검토위원회」
2008	- 「유니버설 디자인 사고에 기반한 관광촉진사업 검토위원회」 - 「유니버설 디자인 사고에 기반한 관광촉진사업」
2011	- 「유니버설 투어리즘에서 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사」
2012	- 「유니버설 투어리즘 촉진을 위한 지역활동에 관한 검토회」
2013	- 「유니버설 투어리즘 보급·촉진에 관한 검토회」
2014	- 「유니버설 투어리즘 촉진사업」
2015	- 「유니버설 투어리즘 촉진에 관한 효과 검증」 - 「영유아 동반 및 임산부 여행촉진사업」 - 방일 외국인여행자용 유니버설 투어리즘 정보발신(홍보) 사업
2016	- 「유니버설 투어리즘 촉진에 관한 지원업무」
2017	- 「2020 유니버설 디자인 행동 계획」 작성 - 2020 올림픽 대비 유니버설 투어리즘 대응 매뉴얼 작성
2018	- 「유니버설 투어리즘 촉진을 위한 실증사업」

출처: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계획 수립 연구. p. 216.

- 일본은 BF관광 상담창구를 설립하여 배리어프리 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였으며, 유니버설 투어리즘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BF관광 상담창구는 2013~2016년까지 관광청에서 운영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으며, UT센터는 일본 배리어프리 관광추진기구 회원 21개 기관, UT 추진 네트워크 회원 12개 기관 등이 참여

04 충남 무장애 관광 실태 분석

1. 관련 정책 현황

1) 무장애 관광 관련 조례

- 충청남도는 2020년 7월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최초 제정하였으며 2022년 이를 일부 개정함
- 충남도 내 기초지자체에서는 총 15개 시·군 중 논산시, 천안시, 서천군, 태안군의 4개 지자체가 무장애 관광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서천군이 2021년 3월로 가장 먼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대부분 비교적 최근(2022년 이후) 관련 조례를 제정
 - 논산시, 천안시는 포괄적 범위에서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무장애 관광 조례를 직접적으로 공포한 지자체는 논산시, 서천군, 태안군
 - 조례는 대체로 ‘무장애 도시 조성’,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관광약자’ 등의 명칭 사용

[표 11] 충청남도 내 무장애 관광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지자체	자치법규명	공포일자 (제정 전부/일부개정)
충청남도	-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2022. 12. 30.(일)
	- 논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3. 07. 10.(제)
논산시	- 논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21. 12. 20.(제)
	- 천안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3. 02. 01.(제)
천안시	- 천안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3. 02. 01.(제)
서천군	- 서천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21. 03. 30.(제)
	- 태안군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2022. 11. 14.(제)
태안군	- 태안군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2022. 11. 14.(제)
	- 태안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2022. 02. 25.(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검색일: 2023.07.17.)

- 충청남도 내 무장애 관광 관련 조례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목적, 정의, 책무, 재정지원 조항(도지사, 시장, 군수)은 5개 지자체 조례 구성 항목에 모두 포함되어 있음
 - 책무조항은 도지사 및 각 시장·군수가 관광약자 및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함을 명시
- 무장애 관광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조례에서는 관광약자 또는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계획 및 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관한 항목을 포함함
 - 충청남도 조례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조성사업 추진을 명시하고 있으며, 기타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태안군은 계획수립과 시행은 무장애 도시 관련 조례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조례에서는 구체적인 관광 조성사업의 추진과 지원 항목을 명시

[표 12] 충청남도 내 무장애 관광 관련 조례 구성 내용

구분	지자체
목적	- 충청남도, 논산시, 천안시, 서천군, 태안군
기본이념	- 태안군
정의	- 충청남도, 논산시, 천안시, 서천군, 태안군
책무	- 충청남도, 논산시, 천안시, 서천군, 태안군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충청남도, 논산시, 태안군
적용범위 및 대상	- 논산시, 천안시, 태안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충청남도, 논산시, 서천군, 태안군(무장애 도시)
사업	- 충청남도, 논산시, 서천군, 태안군(무장애 도시, 관광약자)
재정지원	- 충청남도, 논산시, 천안시, 서천군, 태안군
협력(정부, 시민, 기관, 단체, 사업자 등)	- 충청남도, 논산시, 천안시, 태안군
위원회의 설치	- 충청남도, 서천군
위원회의 구성	- 충청남도
임기	- 충청남도
위원장의 직무	- 충청남도
회의	- 충청남도
수당	- 충청남도
자문	- 논산시, 천안시, 태안군
포상	- 논산시, 천안시, 서천군, 태안군
센터설치 및 운영	- 충청남도
업무의 위탁	- 충청남도
시행규칙	- 천안시, 서천군, 태안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검색일: 2023.07.17.)

- 계획수립과 시행에 관한 항목에서는 공통으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재원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충청남도 조례에서 재원확보 조항은 제6조(사업)의2에 명시
- 특히, 충청남도의 경우 무장애 관광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및 시행할 수 있음을 규정
- 조성사업 관련 항목에서는 대부분 편의시설 확충,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등 정보제공, 관광환경 조성 인식 확대 교육, 무장애 관광콘텐츠 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제시함
 - 충남도 조례에서는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실태조사 항목을 추가로 포함하고 있으며, 기초지자체 조례는 무장애 관광환경 정보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 항목을 실태조사를 대체하는 항목으로 제시

[표 13] 무장애 관광 조례 내 계획 및 사업 구성

조례 조항/호	충청남도	논산시	서천군	태안군
계획수립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	●	●	
추진과제와 추진 방법	●			
관광환경 조성사업		●	●	
무장애관광 환경개선 방안	●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지원방안	●			
콘텐츠 발굴 및 육성	●			
무장애관광 정보 제공 및 안내서비스	●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지원	●	●	●	
조성사업				
관광 편의시설 확충	●	●		●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	
접근성 개선	●			●
무장애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정보제공)	●	●	●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지원	●			●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	●	●
무장애관광 콘텐츠(관광코스, 프로그램) 발굴 및 육성	●	●	●	●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	●	●	
관광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			
무장애관광 실태조사	●			
무장애관광환경 조성 정보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검색일: 2023.07.17.)

2) 무장애 관광 정책 사업

- 충청남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에 2023년까지 5개 시·군 총 8개소가 선정되어 조성 완료 및 예정에 있음
 - 열린관광지 선정 지자체 중 보령시만 유일하게 문화관광 홈페이지 내 열린관광지(대천해수욕장) 관련 정보(무장애 시설 안내도, 무장애 서비스, 무장애 시설을 갖춘 주변관광지 정보, 체험프로그램) 제공
 - 아산시와 한국관광공사 열린관광지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여군, 예산군, 공주시는 관련 정보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표 14] 충청남도 내 열린관광지 선정 현황

선정연도	지자체	관광지점
2016년	보령시	- 대천해수욕장
2018년	부여군	- 궁남지
	아산시	- 외암마을
2022년	예산군	- 예당관광지 - 대흥솔로시티 - 봉수산자연휴양림&수목원
2023년	공주시	- 무령왕릉과 왕릉원 - 공주 한옥마을

출처: 한국관광공사

-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에 선정된 관광지점은 개소당 국비 2.5억 원을 지원받아 시설 개선, 동선 개선, 체험콘텐츠 발굴, 정보제공, 종사자 교육 등의 사업을 진행하게 됨
 - 조성 시 연차에 따라 사업계획 및 단계별 컨설팅, 전문가 자문, 심층면담 조사, 만족도 조사, 모니터링을 수행

[표 15] 열린관광지 조성 체계

구분	0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이후
열린관광지	- 공모 및 선정 - 선정지 대상 사업계획 컨설팅	- 단계별(설계-시공-준공) 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 - 심층면담 조사(조성 전)	- 만족도 조사 - 심층면담 조사(조성 후)	- 모니터링

출처: 한국관광공사(2023). 무장애 열린관광환경 조성 현황자료.

2. 충남도 무장애 관광 제반 현황

1) 교통약자⁹⁾ 현황

- 2021년 기준 교통약자 인구는 전국 15,508,540명으로 총 인구대비 약 30% 비율이며, 이중 충남도는 714,517명으로 전국 교통약자 인구대비 4.6%, 충남도 전체 인구대비 약 33.7% 수준임
- 전국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37.2%로 가장 높고 서울이 27.6%로 가장 낮음
- 충남도 내 교통약자 유형별로는 고령자(58.8%), 어린이(19.5%), 영유아 동반자(11.8%), 장애인(8.4%), 임산부(1.5%) 순으로 교통약자 중 고령자가 가장 높은 비중 차지
- 전국 평균과 비교해 충남도의 교통약자는 고령자(전국 57.1%)의 비율이 높고 장애인(전국 17.1%), 어린이(전국 20.7%), 영유아 동반자(전국 12.5%) 비중이 낮은 것으로 도출

[표 16] 교통약자 인구 및 비율 현황(2021년 말 기준)

구분	총인구(명)	교통약자(명)						
		소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전국	합	51,638,809	15,508,540(30.0%)	1,237,643	8,851,033	260,500	1,943,208	3,216,156
	남	25,746,684	7,340,554(28.5%)	832,592	3,860,508	0	996,557	1,650,897
	여	25,892,125	8,167,986(31.5%)	405,051	4,990,525	260,500	946,651	1,565,259
충남	합	2,119,257	714,517(33.7%)	59,712	419,979	11,000	84,101	139,725
	남	1,093,366	337,682(31.2%)	40,307	182,374	0	43,078	71,923
	여	1,035,891	376,835(36.4%)	19,405	237,605	11,000	41,023	67,802

출처: 국토교통부(2022). 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2) 교통수단 현황

- 2021년 기준 전국의 저상버스는 총 11,073대로 25.8%의 보급률을 보이나, 충남의 경우 총 89대 7.4%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특히, 충남의 시내버스 저상버스 보급률이 전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 계획(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변경(안)(2017~2021))에서 설정한 42.0%에 크게 밀리는 것으로 확인

9)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만 65세 이상),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만 0~12세)를 지칭함.

[표 17] 저상버스 보급 현황(2021년 말 기준)

구분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합계	
	저상버스	보급률(%)	저상버스	보급률(%)	저상버스	보급률(%)	저상버스	보급률(%)
전국	10,828	30.6	28	1.4	217	3.9	11,073	25.8
충남	89	9.9	0	0.0	0	0.0	89	7.4

출처: 국토교통부(2022). 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표 18] 저상버스 운행노선 수 및 충전소 현황(2021년)

구분	운행노선 수			충전소 설치현황		
	시내버스	저상버스	저상버스 운행노선 비율	CNG	전기	수소
전국합계	9,121	1,684	18.5	193	379	25
충남	1,090	139	12.8	2	15	3

출처: 국토교통부(2022). 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지원을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의 보급률은 69.1% 수준임
 -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에서 정한 법정 기준(150명당 1대)에 근거해 산출한 결과
 - 충남은 전국 평균 보급률(86.0%)에도 미치지 못하며, 전국 광역시도 지자체 중 보급률이 가장 낮은 수준
 - 경기도(112.7%), 경상남도(107.3%)는 법정 대수 대비 100% 이상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

[표 19] 특별교통수단 보급현황 및 대체수단 도입현황(2021년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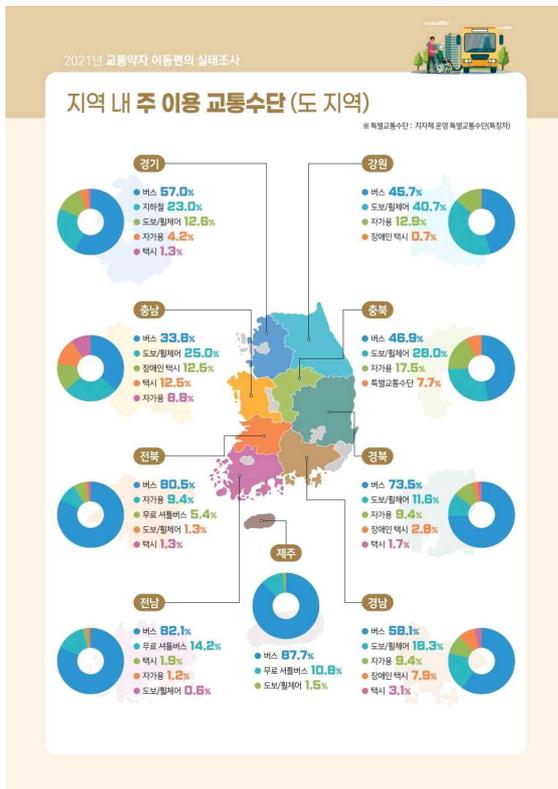
구분	보행상의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 ¹⁾	특별교통수단			대체수단				
		법정 기준 대수	운행 대수	보급률 (%)	소계	임차 택시	바우처 택시	시각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차량	기타 ²⁾
전국합계	698,713	4,738	4,074	86.0	24,557	471	23,718	304	64
충남	34,453	236	163	69.1	33	-	20	13	-

출처: 국토교통부(2022). 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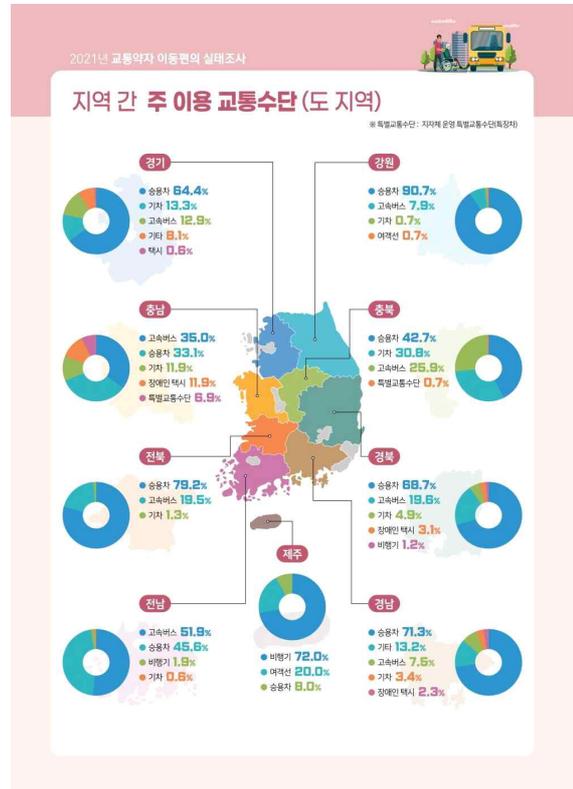
주1) 보행상의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는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21년 12월 기준)

주2) 대체수단 중 '기타'는 지체장애인심부름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등

- 교통약자의 충남도 지역 내 주 이용 교통수단은 버스 33.8%, 도보/휠체어 25.0%, 장애인택시 12.5%, 택시 12.5%, 자가용 8.8%로 나타남
 - 충남은 전국 도 단위 지역 중 버스 이용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전국 평균 51.6%, 전국 도 평균 70.7%), 일반 택시 이용 비중이 가장 높게 도출
 - 이는 앞선 저상버스 보급 및 운행 비중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
- 교통약자의 충남도 내 지역 간 주 이용 교통수단은 고속버스 35.0%, 승용차 33.1%, 기차 11.9%, 장애인 택시 11.9%, 특별교통수단 6.9% 순으로 나타남
 - 지역 간 이동에서는 타 도에 비해 고속버스 이용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 택시 및 특별교통수단 이용 비중도 높게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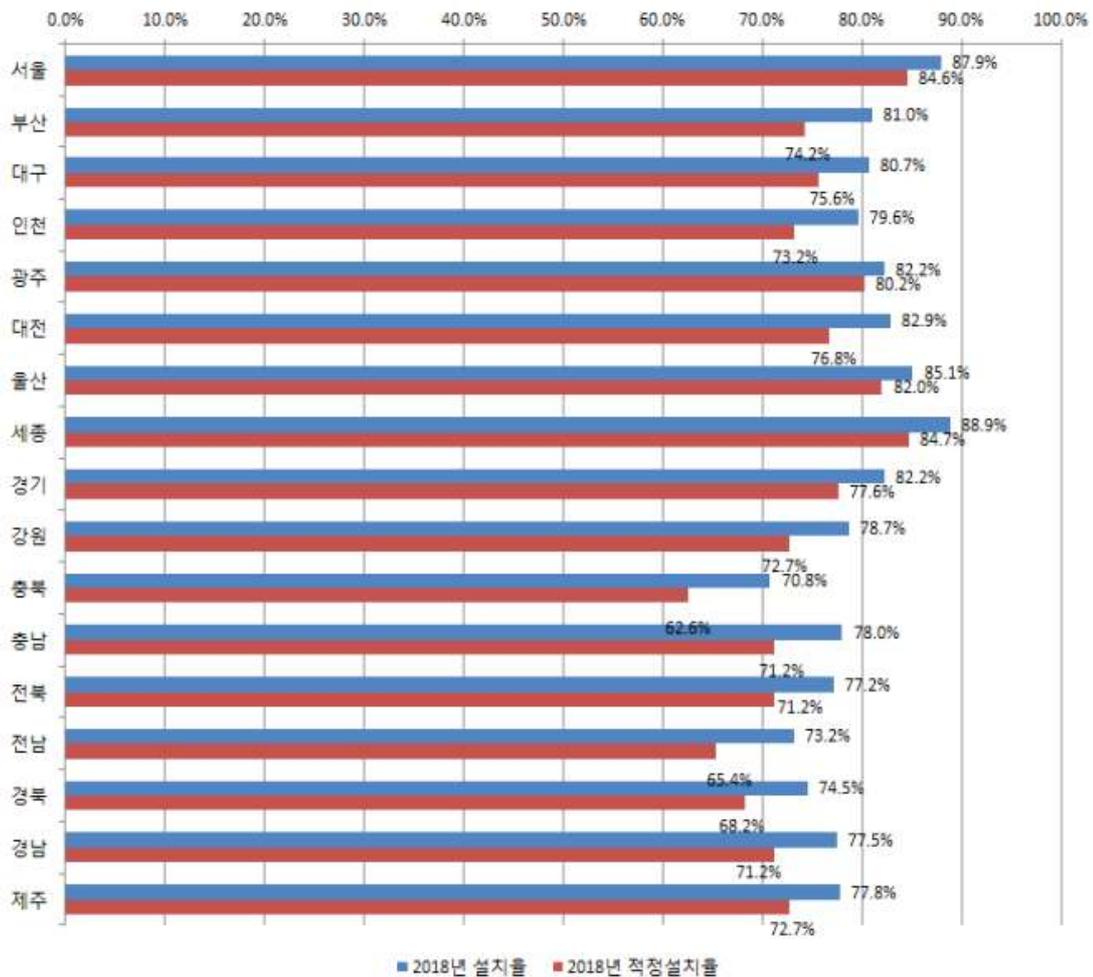
[그림 4] 지역 내 주 이용 교통수단



[그림 5] 지역 간 주 이용 교통수단

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 2018년 기준 전국 장애인 편의시설¹⁰⁾ 설치율은 80.2%, 적정설치율은 74.8%이며, 충남은 설치율 78.0%, 적정설치율 71.2%로 나타남
- 충남은 적정설치율에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의 차이가 전국 기준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



[그림 6] 지역별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

출처: 보건복지부(2019).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10) 공공 장애인편의시설은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주차구역, 높이차이제거), 내부시설(주출입문, 일반출입문, 복도, 계단, 경사로,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에스컬레이터), 위생시설(일반사향,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안내시설(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주출입구 접근로), 기타시설(접수대·작업대), 비치용품 등으로 구분함.

- 충남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비율은 4.5%로 전국 평균(3.6%)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대수는 총 15,524면으로 나타남

[표 20] 장애인 편의시설별 설치율

구분	대상시설 총주차대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총주차대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비율	구분	대상시설 총주차대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총주차대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비율
서울	1,280,663	48,197	3.8%	강원	258,812	10,752	4.2%
부산	665,640	20,918	3.1%	충북	379,084	15,038	4.0%
대구	566,620	18,755	3.3%	충남	342,442	15,524	4.5%
인천	528,975	19,580	3.7%	전북	388,596	15,804	4.1%
광주	413,345	13,710	3.3%	전남	331,127	12,882	3.9%
대전	346,261	9,976	2.9%	경북	521,378	18,449	3.5%
울산	267,519	8,769	3.3%	경남	645,432	21,363	3.3%
세종	148,853	4,657	3.1%	제주	99,589	5,455	5.5%
경기	2,080,448	75,430	3.6%	합계	9,264,784	335,259	3.6%

출처: 보건복지부(2019).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 장애인 편의시설별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을 살펴보면, 충남은 위생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설치율이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나 적정설치율과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 모든 시설에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충남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율은 낮으나 대부분 적정설치로 이루어져 있어 **설치율 향상을 위한 정책**이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즉, 충남은 시설 설치율은 낮으나 도달률이 높은 지역으로 분석

[표 21] 장애인 편의시설별 설치율

구분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수	적정설치율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의 차이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매개시설	161,537	129,494	80.2%	82.2%	119,845	74.2%	77.8%	6.0%	4.4%
내부시설	146,234	119,678	81.8%	83.7%	109,592	74.9%	77.6%	6.9%	6.1%
위생시설	81,877	58,860	71.9%	70.8%	52,149	63.7%	64.4%	8.2%	6.4%
안내시설	16,717	9,950	59.5%	66.8%	8,681	51.9%	61.3%	7.6%	5.5%
기타시설	7,669	5,551	72.4%	75.3%	4,793	62.5%	68.0%	9.9%	7.3%

출처: 국토교통부(2022). 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4) 무장애 관광 정보제공 현황

-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 내 시·군의 문화관광 사이트에서 무장애 관광 편의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2016년 열린관광지 선정지역인 보령시가 유일함
 - 실제 도내 일부 관광지에는 무장애 관광시설, 정보, 서비스 등을 설치 및 제공하는 곳이 있으나 온라인에 해당 정보를 안내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상황
- 다만,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플랫폼¹¹⁾에서 전국 8,582개 관광시설의 무장애 편의 정보 DB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이중 충청남도는 총 427개의 정보를 포함함
 - 추천코스 20곳, 명소 350곳, 음식점 61개소, 숙박시설 41개소 등
 - 명소는 태안군(39곳), 공주시(32곳), 천안시(29곳) 순이며, 음식점은 천안시(20개소), 보령시, 부여군(각 6개소), 숙박시설은 태안군(10개소), 보령시(8개소), 천안시(7개소) 순

[표 22] 충청남도 무장애 편의 정보(개소)

지역	추천코스	명소	음식점	숙박시설
충청남도	20	305	61	41
계룡시	0	1	0	0
공주시	1	32	3	1
금산군	0	11	1	0
논산시	0	15	3	2
당진시	1	23	1	2
보령시	3	23	6	8
부여군	3	19	6	3
서산시	2	19	2	1
서천군	2	20	4	1
아산시	3	24	3	6
예산군	2	22	4	0
천안시	1	29	20	7
청양군	0	12	1	0
태안군	2	39	4	10
홍성군	0	16	3	0

출처: 한국관광공사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플랫폼 자료 취합.

11) 한국관광공사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플랫폼 (<https://access.visitkorea.or.kr/>)

1. 정책목표

1) ‘모두에게 열린 행복한 충남관광’ 실현 추구

- 관광의 포용성을 강조하는 열린 관광을 충남 무장애 관광 정책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여 국민의 관광 향유권 가치를 추구함
 - ‘열린’은 무장애(barrier-free)를 넘어 접근가능한 관광(accessible tourism)과 유니버설 투어리즘(universal tourism)까지 포함하는 의미¹²⁾
 - 이에, 충청남도의 무장애 관광 정책은 관광취약계층 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소외되지 않고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관광 활동 실현을 목표로 추진

2) ‘여행이 일상이 되는 유니버설 관광 선도지역’ 목표

- 제7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의 비전인 ‘일상을 선물하는 충남, 발길이 머무는 행복관광 충남’의 기초를 유지하여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실현하는 무장애 관광 정책을 계획함
 - 일반관광의 경제적 관점과 무장애 관광의 복지적 관점이란 기존의 이분법적 사고를 지양하고, 모든 관광자가 여행이 일상이 되도록 지원하는 선진국형 정책목표 및 계획수립
- 궁극적으로, 충남이 국내 대표적인 유니버설 관광의 선도지역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정책 구상과 전략을 마련함

12)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계획 수립 연구. p. 227.

2. 정책 방향

1) 수혜대상별 맞춤형 정책 과제 제시

- 무장애 관광의 직접적 정책 수혜자인 관광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에도 대상별로 요구되는 정책에 차이가 존재함
 - 장애 유형 또는 정도별 관광 활동 제약요인이 다르며, 따라서 필요한 물리적(교통, 장소, 시설 등), 비물리적(정보, 콘텐츠, 서비스 등) 개선 요구사항에도 차이 존재
- 또한, 일시적인 이동 불편인, 어린이 동반 가족, 비장애인, 외국인 등도 모두를 위한 관광의 측면에서 정책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수혜대상별 공통 또는 개별적으로 요구되는 정책 수요를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고 이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으로 추진함

2) 수요시장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정책 추진

-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충남도의 정책적,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함
 - 기존 정책을 최대한 연계 및 활용하여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만 신규 정책을 도입하는 정책적 유연성 제고
- 단기적으로는 현재 무장애 관광의 최대 수요시장인 고령자에 집중한 정책을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수혜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등의 정책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함

3) 관광산업 진흥 및 충남관광 경쟁력 강화에 초점

- 무장애 관광이 시혜적·복지적 차원이 아닌 새로운 관광시장 창출 및 관광산업 지원을 통한 충남관광 경쟁력 향상이란 호혜적 성격의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함
 - 물리적·비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충남도 내 무장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아젠다 도출
 - 민간영역에서 무장애 관광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적 관점의 지원 정책(무장애여행사 창업 및 지원, 관련 전문인력 양성, 인증제도 등) 발굴

06 정책 제언

1. 무장애 관광 지원 관련 법·제도적 기반 확립

- 무장애 관광 정책이 충청도 전역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지원 조례 제정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현재 충청도 내 15개 시·군 중 무장애 관광(관광약자)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논산시, 서천군, 태안군의 3개 지자체뿐임
- 따라서 아직 법·제도적 기반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논의가 미진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해당 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단, 향후 기초자치단체 간 유사한 사업계획을 수립 및 추진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역에서 이를 통합적으로 계획, 검토 및 조율할 수 있도록 다각적 논의 필요
- 또한, 중앙정부에서(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정립한 법·제도 및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무장애 관광과 관련한 정부 주도의 주요 정책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기초적인 지원 및 관리 체계 구축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관광활동의 지원, 문화환경 정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 등

2. 무장애 관광 기본계획 수립

- 단기적으로는 법정계획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충남의 경우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내 무장애 관광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계획의 정책적 당위성과 추진 가능성을 높이도록 함
- 그러나 최근 무장애 관광 정책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체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충청남도도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 충청도 무장애 관광 실정에 맞는 정책 방향, 추진전략 및 과제, 주요 실행 사업 등을 구체화하여 체계적인 정책 사업 운영 및 효율성 제고
 - 무장애 관광 정책은 물리적·비물리적 환경 조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기본계획과 별도로 실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행 계획(action plan) 마련
 - 한국관광공사(2015)의 ‘장애물 없는 관광시설 및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일본의 ‘유니버설 디자인 실행 계획’ 등을 참고하여 충남의 무장애 관광 가이드라인(매뉴얼) 제작

3. 성공사례 육성을 통한 정책 확산 유도

- 무장애 관광을 충청남도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성공사례 육성이 중요함
- 무장애 관광 선도지역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 및 홍보함으로써 국민(관광객), 지역(지자체), 산업(관광)에서 무장애 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관광 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함
- 무장애 관광과 관련한 분야별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가시화하여 무장애 관광이 지역사회 및 관광시장에 새로운 혁신 모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
 - 무장애 관광 시범도시 조성, 무장애 전문여행사 및 전문인력(트래블헬퍼) 육성, 무장애 관광 우수사업체(교통, 숙박, 식음료, 콘텐츠 등) 발굴 및 지원, 충남 무장애 여행 바우처 발행 등